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 출 일 : 2026. 8.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조례전부개정(2023.09.26.) 이후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위촉
 - (제2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확대
- 아동참여위원회
 - (제27조) 아동위원의 연령기준에 의한 해촉 명시
 - (제29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임시회 개최 기준 정비
-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관련 장 신설(제6장)
 - (제35조~제38조) 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4개 조 신설

3. 참고사항

-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처부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26. 5. 7. ~ 2026. 5. 27.(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개정문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을 “부서장과 남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동위원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그 임기는 임기 만료일과 18세에 도달한 다음 해 2월 28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장(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제35조(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6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7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시행 부서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8조(추진단의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소관 관·과		여성아동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여성아동과장 배 진 위
	팀장 직위·성명	아동친화팀장 정 진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영 명 (031-590-840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7.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서장과 남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회의) ① ---------- 2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7조(임기) ---------- ---------. 다만, 아동위원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그 임기는 임기 만료일과 18세에 도달한 다음 해 2월 28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제29조(회의)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최한다.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신 설>	제35조(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36조(추진단의 기능)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신 설>	제37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단원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시행 부서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38조(추진단의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조례안 제22조(회의)에서 정기회의를 연2회로 개최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조례안 제22조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여성아동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24)

1. 여성아동과-11599(2026. 4. 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남양024) 1부. 끝.

여 성 아 동 과 장 배진위.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6. 4. 6.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1745 (2026. 4. 6.) 접수 여성아동과-11747 (2026. 4.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24			
정 책 명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여성아동과		
	담당자명	이영명	전화번호	031-590-84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4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아동과)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17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확대(안 제22조) - 아동위원의 연령기준에 의한 해촉 단서조항 신설(안 제27조) - 아동참여위원회 임시회 개최 기준 정비(안 제 29조) - 제6장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추진단 신설(안 제35조~안3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여성아동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여성아동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22)

여성아동과-11598(2026. 4. 3.)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송호림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6. 4. 6.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4051 (2026. 4. 6.) 접수 여성아동과-11711 (2026. 4. 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22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여성아동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6급 이영명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4. 6.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2026년 4월 6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여성아동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여성아동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남양주시 여성아동과-11535(2026. 4. 3.)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및 추진단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기구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u>규제심사 대상이 아님</u>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인재현 의회법무과장 2026. 4. 3. 이봉규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4521 (2026. 4. 3.) 접수 여성아동과-11558 (2026. 4. 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법예고 결과보고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여성아동과-14894(2026. 5. 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5. 7.(목) ~ 2026. 5. 27.(수) /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예 고 결 과 : 의견없음
마.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이영명	아동친화팀장	정진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통합돌봄과장	대결 2026. 5. 29. 노영광
복지국장	전결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한지혜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여성아동과-16922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8402 팩스번호 031-590-2269 / lymyoung@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